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4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윤영석 · 김종양 · 박대출
유용원 · 김대식 · 김태호
박성민 · 곽규택 · 정동만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

부터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금융비용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12월 31일 인지세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의 융자·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을 “제1호는 2029년”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을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u>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u> <u><신 설></u> 4.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9호</u> <u>및 제11호는 2029년</u>----- ----- ----- <u>3의2.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u> <u>만 적용</u> 4. (현행과 같음)
---	---